

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5. 16

나. 회부일자 : '97. 5. 16

3. 제안이유

-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국·과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,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에서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함.
- 직제개편에 의한 국·과의 명칭을 변경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 및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국·과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### 그 주요골자는

-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삭제토록 하고
-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으며
- 직제개편에 의한 직명 즉 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공업경제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정비하고
-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지사가 되어있는 것을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본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